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1가단1479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구태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훈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2018. 6. 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158,3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의 채권자, 소외 C은 채무자, 피고는 C의 처로서 수익자의 각 지위에 있다.
- 2) 원고는 주류도매업,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C은 아래의 각 채권 발생 당시 요식업 및 주류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3. 6.경부터 원고와 체결한 주류공급계약에 따라 주류를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이 사건 제1채권

가) 소외 D이 2015. 4. 30.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4. 30.로, 이율을 월 1%로, 연체이율을 연 30%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소외 C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6. 소외 D 명의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소외 C, D은 2015. 6. 24.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5년 증서 제679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갑 제2호증, 이하 그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로, 그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으로 각 줄여 쓴다).

다) 소외 C,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0583호(본소)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인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22가합109771호(반소)로 위 가)항 기재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2023. 7. 13. 본소를 기각하고, 반소를 전부 인용하여 C, 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814,182,257원 및 그중 대여원금 299,958,90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제2채권

가) 원고는 2016. 5. 12.경 소외 C 등과 사이에서, 서울 노원구 F 지하 1층 "G", 서울 도봉구 H빌딩

지하 1층 “I”, 서울 노원구 J빌딩 1층 “K”(이하 위 각 업소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업소’라고 줄여 쓴다)의 각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창업지원자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는 내용의 대여 및 주류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갑 제7호증, 이하 그 약정을 ‘이 사건 제2약정’으로, 그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으로, 이 사건 제1, 2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채권’으로 각 줄여 쓴다).

- ① 원고는 창업지원자금으로 1회에 한하여 250,000,000원을 대여한다.
- ② 소외 C 등은 위 대여금을 2016. 6.부터 매월 13일 7,000,000원씩 상환한다.③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한다(다만 약정내용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이자는 면제한다).
- ④ 소외 C 등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 곧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대여금 잔액, 이자액 등을 합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약정위반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여금의 30% 상당액인 75,000,000원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 등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소외 C 이 사건 제2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C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12619호로 이 사건 제2채권액 312,984,071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주류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23. 4. 19. 소외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62,173,254원(= 대여금 잔액 237,173,254원 + 위약금 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과 피고의 재산 변동

1) L아파트 매각 등

가) 당초 C 및 피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도봉구 L아파트 M호에 관하여 2018. 6. 30. 매매대금 520,00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8. 7. 12. N, O 명의의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아울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당초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52,800,000원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P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8. 30.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2) Q아파트 전세권설정 등

가) 피고는 2020. 10. 7. Q아파트 R호에 관하여 같은 날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46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S조합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일인 2020. 10. 7. 위 전세권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60,000,000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21. 12. 21. 현재 그 피담보채무 잔액은 368,000,000원이다.

라. 채무자 C의 재산상태

C은 위의 각 물권변동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T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P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L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520,000,000원에서 각종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66,158,335원[= (위 520,000,000원 - P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변제액 287,683,330원) × C 지분 1/2 - 소외 U에 대한 변제액 50,000,000원]을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전세자금의 일부 명목으로 증여한 행위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158,3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증여를 받은 바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가사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소유인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위 대법원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여도 C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증여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C과 피고 사이에 매우 많은 상호 송금내역이 있다. 그 중 C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자금만을 특정하여 그 명목과 원인, 반대로 피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의 유무와 액수 등을 일체 살피지 않은 채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더욱이 부부 사이인 C과 피고는 서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일상가사에 관한 각종 법률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일방인 피고에게도 고유재산이 있으므로, 그중 어느 송금 등만을 특정하여 증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한다.

3) C과 피고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C의 처인 피고, 지인, 거래처, 소비처들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이들에게 돈이 출금 또는 이체되는 반복적인 거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C이 금융기관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이용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다가 결제일이 되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대출금을 갚고, 한도가 발생하면 다시 대출하여 생활하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를 위한 자금유통과정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원고는 피고의 소득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C이 피고에게 사해의사로 돈을 증여한 후 자신이 필요할 때 피고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듯 피고에게도 고유재산이 있는 것이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C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C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도 상당수 존재한다.

5) 원고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등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등은 2022. 11.경 위 L아파트 매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해행위도 발견할 수 없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내용으로 불송치결정(혐의 없음)을 받았다.

6) 가사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변제’로 본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C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C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양호